

8. 강의전담교원 임용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의전담교원의 자격, 임용기간, 계약조건, 기타 처우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전임교원중 강의전담교원(이하 “교원”이라 한다)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교원의 직급) 강의전담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. (2012.7.1.자구수정)

제4조(직무) ① 교원의 직무는 강의, 학생지도 및 봉사활동 등으로 한다..

② 강의담당시간은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하여 학기당 1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, 초과한 강의시간에 대하여는 초과 강의료를 지급한다.

제5조(신규임용) 교원의 신규임용은 교원신규채용세칙에 준한다.

제6조(임용기간) ①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일 직급에서 임용재계약을 제청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동일직급에서 임용재계약을 할 수 있다.

② 신규임용의 경우 2년 임용기간을 1년 단위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7조(임용계약 조건) ① 임용계약은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체결한다.

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전조의 임용기간 이외에 급여, 근무조건, 업적 및 성과양정 등 필요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.

제8조(재임용 조건 및 절차) ①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및 계약서에 근거하여 교육업적등 강의전담 교원의 의무사항을 충족해야 한다. 다만 강의평가 점수가 계약기간 평균 70%이상 이어야 한다. (2017.12.15.개정)

② 재임용절차는 교원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다.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재임용 탈락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9조(복무) ① 강의전담교원은 연구년, 파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② 강의전담교원은 타 직종 및 기관의 전임의 직을 수행 할 수 없다. (2017.12.15.신설)

제10조(처우) ① 강의전담교원은 경력과 업적을 심사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12개월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.

②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직장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, 퇴직금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.

③ 임용기간 중 발표되는 논문이나 학술활동에는 본 대학교 교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④ 강의전담교원은 교내연구비 지원 과제에 단독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공동연구자로는 참여할 수 있다. 다만, 학술논문 게재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 (2017.12.15.신설)

제11조(준용규정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